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방법〉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1]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교육 훈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안전계획서 작성함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안전계획서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소방시설법」 제20조6항 및 시행령 제24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37쪽 참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임명 정·부 안전 관리자 임명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신고서류 확인 시설 내에 안전 관리자 성명 등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선임 기준 : 1명 「소방시설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참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 연2회, 이용시설 연1회 안전교육 실시 수시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실전 폐난훈련 실시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중 상시 근무·거주인 10명 초과 시설 「소방시설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참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포함 개별 시설 안전관리매뉴얼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2~23, 29~30쪽 참고하여 개별 시설에 맞는 매뉴얼 작성
[2] 책임 보험 가입 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충족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사망 시 1인당 5천만 원 이상 보상한도 설정 시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3 참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참고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07,108쪽 참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 	

분야	항목	내용		법령 등 근거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3] 소방 안전 관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33m² 이상 각 실별로 소화기 설치 각층마다 소형소화기는 20m 간격으로, 대형소화기는 30m 간격으로 설치 주방이나 보일러실에는 바닥면적 25m²마다 소화기 비치하고, 별도로 자동화산소화기 설치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으로 대체 가능) 주방화재용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소화기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참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 압력계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음 머리 쪽으로 들어 흔들면 밀가루 흐르는 소리가 날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교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참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재 탐지설비 :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시각경보기 : 노유자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4]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600m² 미만인 노유자시설(단,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전원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 및 바닥면적 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24시간 상시 근무인 있을 경우 예외 인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잘 보이며, 실수 반경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설 및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 600m² 미만인 노유자시설(단,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별표5 및 소방청 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소화전 함 내 호스 및 관창이 들어 있음 •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서 시설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의 호스를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5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노유자시설 전층에 설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이 없음 • 소화전 설비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음 • 해당 시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내일 것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음 • 실내장식 공사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려진 부분이 없음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조의 옆면에 수위계가 있는 경우 수위계 전체 길이의 4/5 이상 유지 •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over flow) 유입구 최소 높이까지 유지 • 옥내소화전 1개당 13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 옥외소화전은 35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 스프링클러는 80리터*20분 소방용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 고시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옥내소화전 경우 최대 5개로 계산하여 $2.6*5=13\text{m}^3$ 수량 확보해야 함 • 옥외소화전 경우 최대 2개로 계산하여 $7*2=14\text{m}^3$ 수량 확보해야 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음 (주차차량 및 기타 시설물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미흡) • 소화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음 • 교류전원과 정상전원(직류 24볼트)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음 • 화재 표시등에 불이 꺼져 있음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 받음 •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상황 소방서로 통지함 • 녹음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 고시 「자동화재속보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 지도 부착 • 피난방법과 설명이 부착됨 • 피난도우미가 지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39-44쪽 참고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등은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쉬운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 비상조명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면적이 4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층과 11층 이상 제외 모든 층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신체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ex)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는 승강식피난기가 적응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및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45-50쪽 참고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이 없음 • 설치 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 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의 경우,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음 •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음 • 대피로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의무 시설 : 3층 이상 층이고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인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소방시설법」 제10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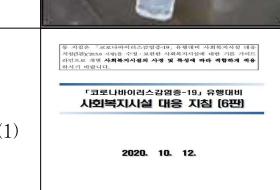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소방 안전 관리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규정에 맞게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있음 방화셔터(방화문)이 화재감지기 작동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임 방화셔터 작동 개소주변에 적재물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참고 대상: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방화구획,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외부 피난 가능한 연결 복도 중 하나 설치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이상인 총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5의 5호 가목 및 소방청 고시 「제연설비의 회색안전기준」 참고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연설비를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층 이상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 시설은 충수와 무관하게 배연 설비 설치의무 ('15.9.22 이후)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카펫, 종이벽지 외의 벽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등이 방염처리가 되어 있음 첨구류, 소파, 의자의 경우 방염처리 권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참고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단열 시공법을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으로 했을 경우 단열재,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로 사용 외단열 공법이 아닌 내단열 시공의 경우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참고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와 같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였음 내부 마감재가 노후화 되있지 않음 	

분야	항목	내 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4] 전기 안전 관리			<table border="1"> <tr> <td>불연 재료</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강화 시멘트판 -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 석고보드(두께 12mm 이상) </td></tr> <tr> <td>준불 연재료</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보드(두께 9mm 이상) - 목편 시멘트판 - 경질 목편 시멘트판 - 목편 시멘트판 </td></tr> <tr> <td>난연 재료</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 합판(두께 5.5mm 이상) - 석고보드(두께 7mm 이상) </td></tr> </table>	불연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강화 시멘트판 -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 석고보드(두께 12mm 이상) 	준불 연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보드(두께 9mm 이상) - 목편 시멘트판 - 경질 목편 시멘트판 - 목편 시멘트판 	난연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 합판(두께 5.5mm 이상) - 석고보드(두께 7mm 이상) 	
불연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강화 시멘트판 - 유리섬유 혼입 시멘트판 - 섬유 혼입 규산 칼슘판 - 석고보드(두께 12mm 이상) 									
준불 연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고보드(두께 9mm 이상) - 목편 시멘트판 - 경질 목편 시멘트판 - 목편 시멘트판 									
난연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 합판(두께 5.5mm 이상) - 석고보드(두께 7mm 이상)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로티 구조로 건물 1층 전부 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일 경우 건축물 연면적 1,000m² 미만 여부 표시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음 								
[5] 가스 안전 관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전차단기가 사진과 같이 설치되어 있고, 600V 이하 분배전반에 설치되어 있음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험 버튼을 눌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설비의 플러그는 전용콘센트에 삽입되어 있어야 함 멀티탭 정격전류에 맞게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음 노출전선 중 전선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24~125쪽 참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별표11 등 참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규칙 별표20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참고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6] 재난 대응 대책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에 손상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 끊긴 부분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용기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50쪽 참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등 참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 정보 수집절차가 계획되어 있음 • 항상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 재난방송 청취와 전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57쪽 참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관할 협력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58-63쪽 참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대, 가마니, 삶, 리어카, 우비, 장화, 랜턴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수방자재 창고에 자재 보관 상태를 기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8-219쪽 참고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6] 재난 대응 대책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의약품 및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난용품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12쪽 참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등에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품을 두지 않음 • 집중 호우 시를 대비하여 긴급 배수펌프나 물막이 자재를 준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9-210쪽 참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에 페뢰설비가 되어 있음 • 배전반이나 변압기에 접지가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참고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확보하고 있음 • 냉방기기 관리자가 지정되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음 • 실외기 청소상태가 양호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이나 건물 주변에 지반 침하가 없거나 바닥 포장 상태가 양호함 • 하중에 의한 천장 처짐 및 벽면 기울임 현상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음 • 수분 유입에 의한 누수흔적 및 맥태가 발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참고 • www.sfmis.or.kr(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부식 및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음 • 콘크리트 벗겨짐 또는 떨어짐 현상이 없음(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mm이상, 박락 깊이가 20mm이상인 경우 위험)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8] 급식 위생	(3)		• 창호가 가울어진 부분이 없고, 단열기능이 있음	
			• 지붕, 옥상배수관 막힘 부분 없음 • 흄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 막힘 부분 없음	
				
	(4)		• 탐정에 균열 및 침하 발생하지 않음 •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도(위치 변경이나 뒤집어짐)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음	
				
	(5)		• 시설물 준공 시 내진 설계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	• 기준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행정안전부, '20.7)
	(6)		• 시설물이 내진 설계 적용이 안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 체크 1)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이거나, 2)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	• 기준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고(행정안전부, '20.7)
	(1)		• 음식조리 시 위생관련 복장을 모두 갖추고 일함 • 작업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66쪽 참고
	(2)		•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및 식품을 제공하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시행규칙 별표24 참고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9] 감염병 관리 대책	(3)			
			• 재료별 저장조건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음식물 저장용기의 관리상태가 양호함	•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 위생을 해치는 별레 등의 혼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구를 사용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4)		• 칼이나 도마 등 조리기구를 살균·소독제·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하여 사용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4 및 별표25 참고
			• 조리장 내 구비되어 있는 수세시설과 소독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5)		•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고 있음 •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폐기물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5 참고
	(6)		• 감염병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현행화)하고 있음	
	(1)			
	(2)		• 감염병 관련 비상연락체계(격리시설-관할보건소-시군구 및 시도)를 구축하여 현행화하고 있음	

분야	항목	내용		
		참고사진	세부평가항목	법령 등 근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별 감염관리 책임자(방역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예방수칙 및 감염대응지침 등 교육(전파)을 실시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을 확보 및 보유 여부하고 있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주요공간 주기적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대기)할 수 있는 격리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내 가림막 설치 또는 좌석 간 띄워 앉기, 한 줄로 앉아 식사 가능도록 표시되어 있음 	